

제 7 장 운영내용

제 1절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82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① 입소정원 : 행복드림요양원의 입소정원은 46명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소정원은 시설의 인력, 공간, 설비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 ② 모집방법
 1. 행복드림요양원 홈페이지 광고 모집
 - 시설 공식 홈페이지([시설 홈페이지])에 입소 안내 공고를 게시한다.
 - 공고 내용은 입소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문의처를 포함하며, 최소 7일 이상 게시한다.
 - 온라인 신청 양식을 제공하여 신청 편의성을 높인다.
 2. 신문광고지 광고 모집
 - 지역 신문 또는 전국 주요 일간지에 입소 모집 광고를 게재한다.
 - 광고에는 시설 소개, 입소 자격, 시설연락처, 신청 마감일을 명시하며, 최소 2회 이상 게재한다.
 - 지역 커뮤니티(아파트 게시판, 주민센터 등)에 광고지를 배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 검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시설 정보를 등록하여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정보(위치, 연락처, 제공 서비스, 입소정원)를 최신으로 유지하며,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 ③ 입소절차
 1. 입소계약 원칙
 - 본원의 입소는 입소 당사자(또는 신원인수인)와 시설 간 계약(입소계

약)에 의한다.

-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며, 계약 체결 시 이용료, 서비스 내용, 계약 조건, 해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입소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1~5등급, 시설급여)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등급외자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시설급여로 판정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여 입소한다.
- 단,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등급외자로 입소할 수 있다.
- 등급외자로 입소하는 경우, 이용료는 100%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며,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수급자의 건강 및 인지 상태, 질병, 수술에 따른 입원 등으로 급성기 판정을 받아 인정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이 경우 3~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나 지속적인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4. 기초수급자

- 1) 기초수급자 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 이용신청서 제출)한다.
-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

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다.(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입소건강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 5) 장기요양급여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약관으로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5. 일반 수급자

-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한다.
-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한다.
- 3) 이하 위 '기초수급자'의 4) ~ 6)과 동일하다.

④ 입소계약 세부사항

1. 계약기간

- 입소계약은 5년으로 체결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연장한다.

2. 계약목적

- 입소자에게 장기요양등급에 맞는 시설급여(생활 지원, 간호, 재활 등)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공단 부담 80~100%)과 본인부담금(0~20%)으로 구성되며, 비급여 항목(예: 식비, 개인 용품비)은 별도 청구된다.

-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감경된다.
- 비급여 항목별 비용은 계약 체결 전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절차, 비용 납부, 비상 연락을 책임진다.
- 신원인수인은 시설의 서비스 제공 방침을 준수하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 시 시설과 협력해야 한다.

⑤ 계약 해제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30일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제2항 제4호(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외 유·무선 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2. 시설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1) 수급자의 건강 악화
 - 2) 시설 규정 위반 (폭력, 안전 위협 등)
 - 3) 비용 미납 (2개월 이상)
 - 4)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 제92조에 명시된 고압적 태도, 위협적 언행, 반복적 트집 잡기 등으로 인해 직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 내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계약 해제 시 잔여 이용료는 정산 후 반환한다.

⑥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소용 건강진단서 1부
4. 처방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필요 시)
5. 개인사물 및 용품 목록 1부

⑦ 모집 및 계약의 투명성

1. 모든 모집 공고와 계약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신청자 및 보호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문의는 시설 대표 연락처([시설 연락처]) 또는 이메일([시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제 8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 당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를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계약목적 : 여가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를 평안하고 품격 있게 모시기 위함이다.
- ③ 본 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들이 부담하는 보증금은 없다.
- ④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요양시설 등급별 수가표

○ 2025년 기준 입소시설 수가(30일 기준)

(단위 : 원)

구 분		1 등급	2 등급	3·4·5 등급
본인부담금 (8%)		217,080	201,384	190,176
본인부담금 (12%)		325,620	302,076	285,264
본인부담금 (20%)		542,700	503,460	475,440
비급여(위탁 급식비) 1식 3,500원 * 3식 * 30일		315,000	315,000	315,000
총 본인 부담금	8%	532,080	516,384	505,176
	12%	640,620	617,076	600,264
	20%	857,700	818,460	790,440

※ 상급침실료(1인실)	1일 10,000원*30일=300,000원
※ 이·미용비, 병원비, 약제비	개인발생 실비 부담

2. 비급여는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 . 미용비, 병원비, 약제비 등을 말한다.
3. 상급침실을 원할 시에 상급침실이용료가 발생한다.

4. 본 시설의 입소자는 월 이용료를 제외하고 기타 비용부담액은 없다.
단, 외부 이 . 미용비, 병원비, 약값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5. 위 등급별 수가표는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년도별 갱신되어 요양비 변동이 발생한다.
 6. 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서 계약한 날짜에 시설 계약으로 납부 한다.
-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의무
1.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용을 이행 합니다.
 2. 외출 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합니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드림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 합니다.
 4.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응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5. 보호자는 다른 입소자들에게 말이나 행동에 있어 한 가족처럼 배려하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6.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문 시 방명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면회시간은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7.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8.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습니다.
 9.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에 따른 금액 자부담과 비급여부담 분을 매월 수납한다. 또한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 입원과 외박을 할 경우 해당 요양등급 1일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100%를 납부합니다.
- ⑥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는 입소계약자 및 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약할 수 있

다.

1. 입소계약자가 해지를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시설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입소 시 법정 전염병이 발견되었거나 폭력(언) 및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가 발생하여 이를 입소계약자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입소신청서에 허위 사항 기재 등 부정수단으로 입소할 경우
4. 이용부담금을 1월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5. 10일 이상의 장기적인 입원 또는 외박 시
6.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7. 입소계약자 및 보호자의 사정으로 의료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의 미납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지급 정지를 받는 경우

제 8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① 변경방법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표준장기요양계획서의 시설급여의 1일당 금액과 본인부담율에 따라 같음하여 변경계약서는 생략한다.

②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발급받아 행복드림요양원 행정지원부(사무실)에 제출한다. 1항의 변경방법에 따라 서류제출로 변경계약서는 생략한다.

제 8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체 활 동 지 원		지켜보기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정리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기 능 회 복 훈 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등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간 호 및 처 치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확인, 주사준비·투여·정리,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호흡기 간호	흡인실시, 가슴기, 네브라이저 제공, 산소공급
	피부 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영양 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통증 간호	온·냉습포 제공
	배설 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수혈 등
	의사진료 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건강검진,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시설 환경 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린넨 교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프로 그램	재활 프로그램	각종 체조, 놀이 등을 통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구축예방과 근력 강화를 통한 신체기능을 향상 시키도록 함(물리치료, 작업치료, 수치료, 발마사지, 건강체조, 기타 재활서비스 등)
	정서 프로그램	심리적,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심신의 안정과 생활의 활력을 찾게함.(원예, 미술, 음악, 동화구연 등)
	심리 프로그램	인지기능(기억력 및 지남력) 유지 및 현실감 부여, 자기표현상담(인지, 회상, 놀이치료 등)
	행사 프로그램	기념일, 절기별 행사 등을 통한 기분전환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생신잔치, 어버이날 행사, 명절행사, 송년의 밤 등)

	종교 프로그램	찬송과 율동을 통하여 종교적 활동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도모,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주일예배 및 찬양예배 등의 종교 활동)
	여가 및 생활	다양한 여가 및 생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며, 가정에서 느끼던 것과 동일하게 느끼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드린다.(VTR 시청, 맛사지 등)
치매관리 지원	행동 변화 대처	배회 · 불결행위 · 폭력행위 ·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 행동 대처
응급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타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동행, 산책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② 장기요양급여의 비용부담

본 규정 제 83조 4항 1의 월 이용료에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 86조 [특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기준 및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 어르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특별 보호 서비스 기준

1. 입소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대체 가능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신체적 구속 조치 시 준수사항

1.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체를 일시적으로 구속하는 경우, 어르신의 심신 상태, 구속을 가한 시간, 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그 사실을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린다.

③ 신체적 구속의 정의 및 범위

1. 특별 보호 서비스라 함은 신체적 구속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격리 보호
 - (2)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
 - (3) 경관튜브 제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 (4)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 시 신체 일부의 구속
2. 위와 같은 구속 조치는 입소자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보호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설명하고 기록으로 관리한다.

④ 상급 침실 이용 기준 및 비용 부담

1. 다인실 이용 중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타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용 상급침실 또는 특별침실 이용을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이 경우 시설은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발생하는 차액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⑤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처치에 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시켜 집중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급성 증상 변화로 인한 집중 관찰 또는 산소 공급, 석션 등 전문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 (2) 호스피스 케어 등으로 인해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3) 기타 개별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
2. 상기와 같은 사유로 상급침실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 후 동의를 받는다.
3. 이와 관련된 의료소모품 및 간병 등 부가적인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87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 ① 입소 어르신에게 의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설은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② 담당 간호(조무)사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과 협약된 의료 기관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의료인의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설은 보호자에게 병원 진료를 권유한다.
- ④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와 상담 후 어르신을 병원에 직접 모시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예: 응급상황 등)에는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진행하고, 이후 보호자와 현장에서 만나도록 한다.
- ⑤ 보호자가 당일 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설은 어르신을 병원에 동행시켜 진료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병원비 및 간병비 등 모든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⑥ 응급환자의 경우, 우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안내한 후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 조치한다. 다만, 계약 시 보호자 또는 계약자가 서면으로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시설은 보호자가 어르신의 상태를 지켜볼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제 8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① 입소 어르신이 시설에 설치된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보호자는 해당 손해에 대한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입소 어르신이 다른 입소자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외박 또는 외출 시, 시설의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해당 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본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 8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① 본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 입소자 또는 계약당사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진다.
 -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시설 내에서 입소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면책범위는 인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